

지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檢 討 報 告

검토자 :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진

1. 提 出 者: 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 : 1997. 6. 17

3. 提案理由

- 업무연계성 도모를 위하여 과간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 변경 조정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기획담당관 분장사무중 경영행정임의 및 행정임의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, 총무과 분장사무중 상관지지사항 처리를 기획담당관으로 이관 조정함 (안 제3조 및 제7조).
- 실과 명칭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, 건설과 분장 사무중 공유수면매립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 조정함 (안 제8조).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외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,
- 업무연계성 도모를 위하여 과간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